

## 의안 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조준봉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 검 토 보 고 서

1995년 12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11. 13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11. 16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95. 7. 1자로 공영개발사업이 한밭개발공사로 이관되어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인수 당시의 자본은 대부분 현물로 현금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나. 향후 사업자금 전망으로 보아 430억원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 제34조 및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밭개발공사에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차입계획

차입액	차입선	이 율	차입시기	상환기간	상환방법
43,000 백만원	충청은행	연리 12%	'95.11월 이후 (필요시)	'95.12. ~'96.11	원 리 금 불 균 등 상 환

나. 자금사용

계	송촌택지개발 사 업	원내시영 주택건설	공단자금 상 환	비 고
43,000	2,320	280	40,400	

다. 자금상환계획

구 분	상 환 계 획			상 환 재 원			
	계	원 금	이 자	계	송촌택지 분 양	둔산장기 임대분양	미분양택지 주택분양
합 계	45,742	43,000	2,742	45,742	37,383	5,617	2,742

3. 검토의견

- 본안건은 금년도 7. 1자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인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 자금 수급계획상 부족사업비 430억원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시장의 채무보증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임.

- 동 채무보증안은 충청은행으로부터 43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시장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 차입이 불가피한 사유는 금년 6. 30 기준으로 평가한 공영개발사업의 인수 자산이 2,960억원에 부채가 1,831억원으로 실제 자본이 1,129억원으로 그나마 인수시에 현금인 현물로 인수되었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한밭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자금조달의 한계를 넘어 은행자금 430억원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 차입금 430억원은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는 연 12%, 상환기간은 1년으로 계획한바, 430억원을 일시에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 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신축성 있게 차입하여 가급적 이자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차입자금의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 송촌택지개발사업비에 23억 2,000만원
  - 원내시영주택건설비에 2억 8,000만원
  - 제4공단 사용자금 상환에 40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 상환계획은 원금 430억원과, 이자 27억 4,200만원, 총 457억 4,208만원에 대하여

- 송촌지구의 공동택지분양 선수금 잔금과 택지분양금, 둔산동 장기 임대아파트 분양금, 기타 미분양 택지와 주택등을 조기에 분양하여 기간내에 차질없이 상환 조건임.
- 따라서 동 안건은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의 인수시 현물로 받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은행차입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 차입금 430억원중에는 공단전용자금 상환액이 40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4공단 조성은 공단조성자금은 특별회계간 전용이 가능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시급한 송촌택지개발지구 사업비로 전용 조성하였고, 당초 변제기일인 9월까지 변제기로 한 340억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으로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대상도 되지 않고 있어 제4공단에 입주될 업체중 연말에 공장가동 예정인 한라공조와 내년 1월까지 입주업체에 택지제공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한미협력업체인 한일제관등의 업체등과 기타 입주예정 신청업체들도 인근 타시도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 동 차입금 430억원은 분할차입 보다는 일시금으로 차입, 공단 조성전용자금 전액을 상환하여 제4공단 조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